

서울고등법원

제 8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노5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
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7초기63 등 배상명령신청¹⁾

피 고 인 김성훈 (700301-1055911), 회사 대표

주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0길 21, 302호 (신길동, 파라다이스빌)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청파로43길 14 (청파동3가)

항 소 인 쌍방

검 사 장형수(기소), 최상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이진우, 김은권, 박시영, 이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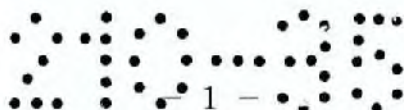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합932 판결²⁾

판 결 선 고 2017. 9. 13.

1) 배상명령신청 사건번호는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제1심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이 있었으나, 제1심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으므로 제1심의 배상명령신청 사건번호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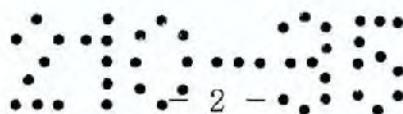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확정판결의 효력 및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2015노 1850), 위 판결은 2016. 8. 29. 피고인의 상고(2016도2786)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X 마진거래 수수료 수입 등으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금(이하 '이자 또는 수익금'을 통칭하여 '수익금'이라 한다)을 상환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하 '종전 범죄사실'이라 한다)과 같고, 대부분의 편취행위는 종전 확정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검사는 종전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파악하여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종전 범죄사실만으로도 상습범으로 기소할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기소하면서 상습범으로 기소하지



도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의 피해자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들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

2)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2014. 8. 28. 이전까지 FX 마진거래를 위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2014. 8. 29.부터는 원금손실 가능성과 투자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 및 그에 관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FX 마진거래를 위해 홍콩에 KIS INVESTMENT TRADING LIMITED(이하 'KIS'라 한다)와 IDS FOREX HK LIMITED(이하 'IDS FOREX'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세일가스 사업을 위해 미국에 IDS ENERGY USA(이하 'IDS ENERGY'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그 외 IDS홀딩스 주식회사, IDS에너지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자금(이하 '차용금과 투자금'을 통칭하여 '투자금'이라 한다)으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비용과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의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 상환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 및 그에 관한 금융비용 등으로 투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상품 판매 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사용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사기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 이용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하위단계의 판매원은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가 경제적 유인으로 활용되어야 한다³⁾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각 지점이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갖추었다거나, 유치수수료 지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이와 같은 조직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각 지점의 조직과 운영에 관여한 바 없는 등 피고인이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특정경

3) 구 방문판매법(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을 요구하였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1965 판결 등 참조). 이후 개정된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는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 중 '후원수당'만을 요구하고 '소매이익'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제범죄범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 12,180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⁴⁾ 기재와 같이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35,422회에 걸쳐 총 1,096,996,544,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피해자들 12,174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⁵⁾ 기재와 같이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35,037회에 걸쳐 총 1,073,856,931,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로, 기존 방문판매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⁶⁾ 기재와 같이 2011. 11. 21.경부터 2016. 8. 26.경까지 35,422회에 걸쳐 총 1,096,996,544,950원”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2⁷⁾ 기재와 같이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35,448회에 걸쳐 총 1,098,250,544,95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⁸⁾.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확정판결의 효력 및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1) 종전 확정판결의 일반적 효력 및 공소권 남용 관련 주장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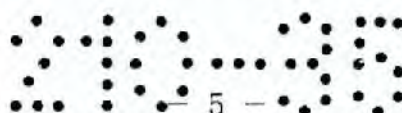
4)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을 포함한 별지이다.

5) 당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1이다.

6) 원심판결의 별지2 범죄일람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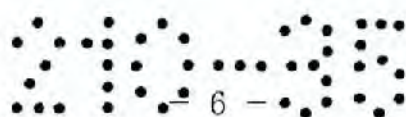
7) 당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2이다.

8) 제1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변경된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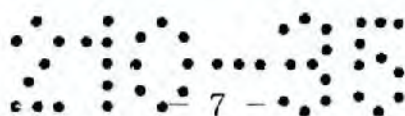
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거나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먼저 확정판결의 일반적 효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29. 확정된 사실,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홍콩에 설립된 KIS의 FX 마진거래 수수료 수입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2. 1. 2.부터 2014. 8. 2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277,570,0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공



소사실과 편취방법이 같거나 유사한 사실, 종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로, 피해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상 사기죄로 각 처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 제기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방문판매법위반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지만,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와 방문판매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등 참조),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방문판매법위반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살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홍콩에 설립된 KIS의 FX 마진거래 수수료 수입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여 2012. 1. 2.부터 2014. 8. 2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277,570,0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FX 마진거래 수수료 수입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여 총 1,073,856,931,450원을 편취하고, 총 1,098,250,544,950원을 교부받아 채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



다.”는 것이어서, 편취방법이 같거나 유사하고, 편취시기가 상당 부분 겹치며, 투자금 모집 방법이 같거나 유사하기는 하지만, 검사가 종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습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전 확정판결과 동일한 피해자 관련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922,5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전 확정판결은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로, 피해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형법상 사기죄로 각 처벌하면서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점, ②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투자관리시스템에 기재되어 있는 투자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등과 종전 확정판결의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제출한 변제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종전 확정판결의 피해자들과 대조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들 중, 피해자 김국성, 박난규, 박도례, 박보연, 박은우, 신숙진1, 심수민, 추윤희는 종전 확정판결의 피해자 김매화, 박란규,

박은숙, 박월선, 신재돈, 심홍숙, 추명자와 각 주민등록번호가 같고⁹⁾, 나머지 피해자들은 종전 확정판결의 피해자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같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들은 종전 확정판결의 피해자들과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들은 종전 확정판결의 피해자들과 동일인이고, 위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종전 확정판결이 선고된 2016. 1. 29. 이전에 범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부분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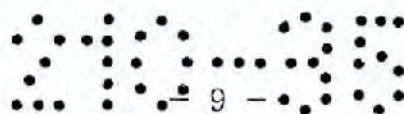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9) 변호인 제출 2017. 7. 5.자 변호인 의견서(2)에 첨부된 참고자료1과 2017. 9. 4.자 및 2017. 9. 11.자 변호인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및 검사 제출 2017. 9. 12.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김국성, 박도례는 김매화와, 박은우는 박월선과, 신숙진1은 신재돈과, 심수민은 심홍숙과, 박난규는 박란규와, 박보연은 박은숙과, 추윤희는 추명자와 각 주민등록번호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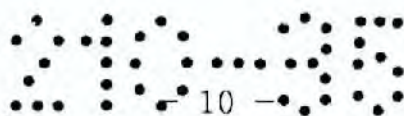
한편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온라인 파생상품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디에스아카데미 주식회사(이하 ‘아이디에스아카데미’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0. 9. 10.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를 위해 홍콩에 KIS를 설립하였다.

○ 피고인은 KIS 명의로 외국의 외환거래 전문 금융기관(FDM, Forex Dealer Member)인 Alpari사, FXDD사 등에 ‘FX 마진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에서 적은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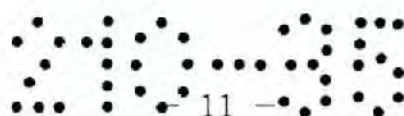


용으로 FX 마진거래를 희망하는 딜러들로부터 위 계좌 보유 금원의 20%에 해당하는 손실담보금을 받은 후 그 계좌와 보유 금원으로 FX 마진거래를 하도록 하고 수익을 정산하는 'FX마진론'을 운영하였고, Alpari사, FXDD사의 경우 FX 마진거래시마다 납부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다시 환급해 주는 점에 착안하여 딜러가 부담한 수수료를 이후 KIS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아 수익을 챙기는 수익모델을 고안하였다.

○ 피고인은 FX 마진거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홍콩 현지에 설립한 KIS 또는 IDS FOREX의 계좌에 자금을 출자하면, KIS 또는 IDS FOREX가 외환딜러로부터 FX 마진거래에 필요한 증거금(담보금) 중 일정부분(최소한 20%)만 납입받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들이 출자한 투자금을 딜러에게 대여해주어 FX 마진거래를 하도록 하고, 딜러가 FX 마진거래에 따른 투자손실로 자신이 납입한 증거금 부분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거래가 자동적으로 중단되어 정산이 이루어지는 '로스컷(Loss-Cut) 장치'가 작동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대여한 증거금 부분은 딜러의 손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며, 딜러들의 손실과 관계없이 거래량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득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피고인은 2014. 8. 29. 이전까지는 피해자들과 대여기간 1년, 이자 월 2~4%¹⁰⁾,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X 마진거래를 위해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매월 약 1~2%의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원금손실 가능성과 투자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 및 그에 관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10) 대부분 월 3%였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국에 설립한 IDS ENERGY를 통해 셰일가스를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시추 및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납입한 후 4개월째로부터 매월 3%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2016. 5. 2.부터 2016. 5. 26. 까지 203명¹¹⁾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미화 32,423,900달러(한화 약 35,860,833,400원)를 모집하였고, 오피튠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FX 마진거래 사업을 하는 위 IDS FOREX에 투자하면 매월 0.8~1%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2016. 7. 11.경부터 7. 29.경까지 총 363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5,099,250,000원을 모집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극히 일부만을 FX 마진거래 사업, 셰일가스 사업, 오피튠 사업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위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위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므로(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행위의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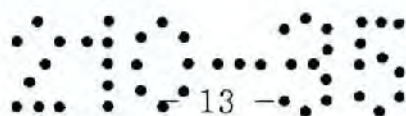
11) 변호인은 254명이라고 하나, 동일인이 여러 번 투자한 것을 제외하면 203명으로 보인다.

가) FX 마진거래 사업 및 오피튼 사업

○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FX 마진거래 사업은, KIS 또는 IDS FOREX가 외환딜러로부터 FX 마진거래에 필요한 증거금(담보금) 중 일정부분(최소한 20%)만 납입받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들이 출자한 투자금을 딜러에게 대어 해주어 FX 마진거래를 하도록 하고, 딜러들의 거래량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득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오피튼 사업에 관하여는 오피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FX 마진거래 사업을 하는 IDS FOREX에 투자하면 매월 0.8~1%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자신들이 투자한 투자금은 FX 마진거래를 위한 자금이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수익금과 원금은 FX 마진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투자를 한 것이다.

○ FX 마진거래 사업은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환율변동성이 높은 국가의 통화를 매매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로, FX 마진거래 영업을 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고¹²⁾, 국내 투자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야만 FX 마진거래를 할 수 있으며¹³⁾,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했다.¹⁴⁾ 피고인은 FX 마진거래 사업을 추진하던 초반기에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FX 마진거래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국내법령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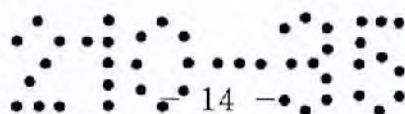
12) 자본시장법 제11조, 제5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13) 자본시장법 제166조, 동법 시행령 제184조
14)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직접 해외 투자중개업자에게 송금하여 FX 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절차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었다.¹⁵⁾ 이와 같이 피고인이 FX 마진거래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FX 마진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었고, FX 마진거래를 위한 해외 송금도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소비대차계약 체결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제시한 외환거래 신용공여(FX Loan) 사업계획서에는 ‘홍콩법인 KIS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100% 합법적인 사업이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단 1%도 없다.’, ‘매월 확정스프레드 수익을 보장받는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피고인이 소비대차계약 체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던 시기인 2010. 9. 24.부터 2014. 3. 12.까지 KIS 명의의 홍콩 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총 미화 2,852,577.47달러(한화 약 2,800,000,000원)에 불과하고, 그 중 1,811,992.94달러(한화 약 1,900,000,000원)는 홍콩 현지에서 마친웅(MA CHING YOUN)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년 봄부터 홍콩의 KIS에 자금을 송금하는 것이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종전 사건 2014. 9. 5. 검찰 진술), 그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KIS에 송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4. 9.경까지도 FX 마진거래를 한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2011. 5. 13.부터 2013. 12. 27.까지 KIS의 FX 마진거래 관련 수수료를 통해 취득한 이익은 총 미화 240,853.18달러(한화 약 250,000,000원)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에 사용한다면서 모집한 투자금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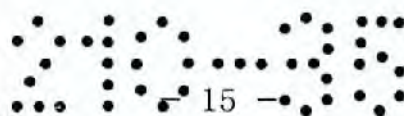
15)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자들에게 상환한 수익금과 원금의 자금원은 FX 마진거래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였다.

○ 피고인이 무인가 중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IDS FOREX(2014. 1. 17. WINOFEX HK LIMITED를 설립하였다가 IDS FOREX로 상호변경)는 2014. 9. 17. 홍콩 금융당국으로부터 Type 3 라이선스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IDS FOREX에 2015. 6. 22. 자본금 명목으로 3,848,617,220원(HKD 27,000,000)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7.까지 자본금 및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9,506,598,548원을 송금하였다.¹⁶⁾ 그러나 피고인이 2015. 6. 22. IDS FOREX에 자본금 명목으로 3,848,617,220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FX 마진거래를 위해 송금하였거나, 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IDS FOREX에 송금된 자금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IDS FOREX가 딜러들에게 증거금을 대여해주어 FX 마진거래를 하도록 하고 딜러들의 거래량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IDS FOREX의 고객 중 전문적인 딜러는 5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한편 IDS FOREX는 2015년에는 평균 월 미화 20만 달러(약 2억 4,000만 원), 2016년에는 평균 월 미화 33만 5,000달러(약 4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지만, 2016. 6. 이전에는 사무실 운영비용이나 직원 월급을 빼고 남는 수익이 거의 없었고, 2015년과 2016년에 IDS FOREX에서 피고인에게 배당을 하거나, 국내로 송금한 금액은 없었다(원심 증인 LO CHING KONG의 증언). IDS FOREX에서 내부적으로 산정한 자

16) 2015. 6. 22. 자본금 명목으로 3,848,617,220원(HKD 27,000,000), 2015. 9. 14. 기존출자자인 WINOFEX HOLDINGS의 지분 취득 명목으로 4,623,471,339원(HKD 30,138,550), 2015. 12. 16. 자본금 명목으로 4,587,931,350원(HKD 30,000,000), 2016. 3. 8. 자본금 명목으로 5,456,539,959원(HKD 35,000,000), 2016. 6. 1. 자본금 명목으로 6,170,439,523원(HKD 40,000,000), 2016. 6. 15.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4,564,839,192원(HKD 30,000,000), 2016. 7. 5. 회사운영자금 및 자본금 명목으로 5,975,230,622원(HKD 40,000,000), 2016. 8. 17. 자본금 명목으로 4,279,529,243원(HKD 30,000,000) 등 합계 39,506,598,548 원



료에 의하더라도,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였다는 2016. 4.부터 2016. 8.까지의 순수익은 미화 기준 4월 74,393달러(약 9,000만 원), 5월 30,488달러(약 3,600만 원), 6월 78,711달러(약 9,300만 원), 7월 445,778달러(약 5억 3,000만 원), 8월 627,915달러(약 7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FX 마진거래 사업에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수수료 수입으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수익금과 원금의 자금원은 FX 마진거래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였다. 비록 피고인이 2014년 후반경부터 피해자들과의 투자계약 형태와 약정문구를 일부 변경하고, IDS FOREX가 홍콩에서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외환거래의 적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미미하나마 사업수익이 발생하기도 하였더라도, 기본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위 투자금을 이용한 돌려막기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한 수익금 지급 등은 근본적으로 변한 바 없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는 이상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해외에는 KIS(2010. 9. 10. 설립), IDS FOREX, IDS GLOBAL(2015. 12. 설립), IDS Bullion Limited(2015. 1. 7. BLASH TRADING LIMITED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상호변경), IDS B2B LIMITED(2015. 6. 30. 설립), Nusantra Capital Securities, IDS HOLDINGS INDONESIA, PT(2015. 11. 23. 설립), IDS CAPITAL VIETNAM(2015. 4. 17. 설립), MSP INTERNATIONAL SDN BAD, IDS HOLDINGS JAPAN(2015. 6. 29. 설립), IDS ENERGY(2016. 1. 27. 설립) 등의 회

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였고, 국내에는 IDS홀딩스 주식회사(2014. 10. 10. 설립), 주식회사 넥스트알파투자자문(2014. 5. 14.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인베스트먼트로 설립되었다가 상호변경), KR선물 주식회사(2014. 10. 금융위원회 대주주변경 승인을 받는 조건부로 투자중개 자격 있는 회사 인수), IDS에너지 주식회사(2015. 4. 22. 설립) 등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위한 자본금 및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약 652억 원¹⁷⁾을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해외 송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국내외에 회사 설립 및 인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948억 원과 프로모션 비용 약 605억 원 등을 더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한 투자금(합계 약 1,553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합계 약 1조 1,640억 원¹⁸⁾의 약 14%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사업을 한다면서 투자금을 모집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지출되기 시작한 것이며, 나아가 위 투자금이 피해자들에게 실명한 바와 같은 내용의 FX 마진거래 사업에 지출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FX 마진거래 사업 5~5.2%, 세일가스 사업 7%, 오피튬 사업 4~4.2%)을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의 지급, 지점장 등 하위 모집책들의 유치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하

17) 피고인이 IDS FOREX에 송금한 39,506,598,548원에 세일가스 사업을 위하여 IDS ENERGY에 2016. 4. 19. 자본금 명목으로 송금한 2,865,028,628원(USD 2,500,000), 2016. 5. 19.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5,970,029,492원(USD 5,000,000), 2016. 6. 1.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5,974,529,508원(USD 5,000,000), 2016. 7. 12.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5,758,820,731원(USD 5,000,000) 등 합계 20,568,408,359원과 Nusantra Capital Securities에 2015. 8. 10. 운영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5,138,341,020원(USD 4,400,000)을 더한 금액이다.

18) 종전 확정판결의 피해금액 약 672억 원과 이 사건으로 최초 공소제기되었던 피해금액 약 1조 968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였다. 피고인은, FX 마진거래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투자관리시스템 (kr.idsedu.com), 세일가스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세일가스 고객관리시스템 (oil.idsedu.com), 오피튠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오피튠 고객관리시스템 (op.idsedu.com)으로 관리하였다. 위 각 고객관리시스템에 의하면 2011. 11. 21.부터 2016. 8. 26.까지 종전 확정판결의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총 1,096,024,544,950원, 투자가 종료된 피해자들에게 원금 상환한 금액은 총 345,717,835,000원,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은 총 138,552,262,100원, 투자금을 모집한 지점장 등 모집책들인 '수혜자'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총 256,239,203,138원이었 고¹⁹⁾, 그 중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총 750,306,709,950원으로, 투자가 진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과 지점장 등 모집책들에게 지급 하여야 할 유치수수료(평균 5%로 산정)만 계산해 보더라도 한 달에 약 37,515,335,498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FX 마진거래 사업으로 취득하는 수익이 위와 같은 정도 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각 지점에 지급하여야 할 유치수수료 등 자금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이 FX 마진거래 사업으로 취득하였다는 수익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고, 나아가 신 규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않는다면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잔고 합계 약 910 억 원으로는 매달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및 유치수수료 조차 몇 달 밖에 지급하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는 피해자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유치 하면서, 그 투자금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와 관련된 사업으로 소요되

19)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2. 10.경까지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원금 및 수익금 합계 약 1,300여억 원은 투자관리시스템에 반 영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는 비용 등 일체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금과 투자금 상환을 보류할 수 있는 등 투자금 손실 위험성에 관한 내용을 투자계약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설명한 내용은 여전히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달러가 FX 마진거래에 따른 투자손실로 자신이 납입한 증거금 부분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 거래가 자동적으로 중단되어 정산이 이루어지는 '로스컷(Loss-Cut) 장치'가 작동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대여한 증거금 부분은 달러의 손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FX 마진거래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계속하여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은 FX 마진거래 사업에서 계속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만일 피해자들이 FX 마진거래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FX 마진거래 사업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선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FX 마진거래 사업 이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투자금을 선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 상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에 투자금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와 관련된 사업으로 소요되는 비용 등 일체의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나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더라도, 그 투자약정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금 사용 및 원금과 수익금 지급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으로 투자자

들의 원금 및 수익금 지급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상황이 되어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화융자산관리주식 유한회사와 중국계 투자은행인 ADIB는 최근 피고인의 법인들에 대한 M&A 및 운전자금 명목으로 미화 5억 5,000만 달러(6,600억 원) 대출확약서를 발행하였고, 미화 기준으로 2016. 9. IDX FOREX에서 80만 불, IDS Bullion에서 3만 불, IDS GLOBAL에서 42만 불, 2016. 10. IDS GLOBAL에서 70만 불, 2016. 11. IDS ENERGY에서 약 17만 불이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급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FX 마진거래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FX 마진거래 사업 수익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 및 원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소위 '돌려막기' 문제가 나타나 있고, 각종 언론 기사 등을 통하여 돌려막기 의혹이 보도되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자신들의 투자금이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 및 원금 상환에 사

용되어도 좋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X 마진거래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상당 부분을 돌려막기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종전 확정판결이 확정된 2016. 8. 29. 이전에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이 종전 확정판결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여전히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성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투자 안전성 등을 설명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돌려막기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면서도 투자를 하였다거나, 언론기사 등에서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일부 투자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투자금이 경영판단에 따라 직간접의 일체의 비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및 피고인에 대하여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언론기사 등에 관하여도 확인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한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와 관련한 의혹이나 문제제기 정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FX 마진거래 사업에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들 투자금의 대부분을 돌려막기에 사용하였고, FX 마진거래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극히 적었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확실하게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FX 마진거래 사업이 아닌 돌려막기 등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은 2014. 1.경 최윤희에게 의뢰하여 FX 마진거래에 투입된 달러들의 관리에 사용되는 메타트레이더4 매니저 프로그램의 외형을 본따 가상 메타트레이더4 매니

저(MetaTrader4 Manager) 프로그램(이하 '가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만들었다. 가상 프로그램은 실제 메타트레이더4 매니저 프로그램과 구조는 거의 비슷하나 실제 환율호가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내역과 수익률 등을 임의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피고인은 대신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실제 환율호가를 받아 가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생시킨 허위의 거래내역과 수익률 등이 담긴 Summary Report를 출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만든 가상 프로그램은 투자자들에게 피고인이 실제 FX 마진거래 사업에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사용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피고인이 가상 프로그램으로 허위의 거래내역과 수익률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시연하거나, 허위의 거래내역과 수익률 등이 담긴 Summary Report를 투자들에게 보여주어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와 같이 허위의 거래내역과 수익률 등을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가상 프로그램으로 허위의 거래내역과 수익률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시연한 적이 없고 가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인다.

나) 셰일가스 사업 관련

○ 피고인은 2016. 1. 27. IDS ENERGY를 설립하고 2016. 4. 19.부터 7. 12. 사이에 미화 1,750만 달러를 자본금 및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한 셰일가스 사업 수익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원유가격 45달러 25개 시추공(well)을 기준으로 IDS ENERGY의 수익을 2016년도에 33,768,054달러, 2017년도에

23,637,637달러, 2018년도에 16,546,346달러 등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8. 26.자 TEXAS 업무현황보고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등 2016년도에 위 수익 예측과 같이 25개 시추공을 확보하여 그와 같은 수익을 낸다는 것이 실제 사업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한편 셰일가스 업계는 원유가격이 적어도 배럴당 50~60달러는 되어야 가격경쟁력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었음에도 위 수익 예측은 원유 가격 45달러를 기준으로 2016년도에 피고인이 셰일가스 사업 투자금으로 모집한 금액 보다 많은 33,768,504달러를 IDS ENERGY의 수익으로 예측하고 있는 등 위 사업 수익 시뮬레이션은 그 신뢰성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었다.

○ 피고인은 셰일가스 사업을 위해 2016. 5. 2.부터 2016. 5. 26.까지 약 200여명으로부터 합계 미화 32,423,900달러를 투자받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때로부터 3개월 후부터 월 3%의 수익금과 2년 후 원금을 돌려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시하는 셰일가스 사업과 관련된 2016. 8. 16.자 TEXAS 출장업무보고에 의하더라도 오일웰(well) 3개, 가스웰 1개만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 가스웰 1개, 오일웰 1개는 많이 시추되는 웰은 아니고, 나머지 2개 오일웰은 시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6. 8. 26.자 TEXAS 업무현황보고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시추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셰일가스 사업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대한 수익금을 포함하여 각 지점에 매월 7%의 금액을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시추 상황에서 매월 약 2,554,097,150원(2,269,300달러²⁰) × 1125.50원²¹)을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6. 9. 2.부터 시작

20) 투자금 합계 32,423,900달러 × 0.07

21) 2016. 9. 13.자 환율

될 예정이었던 이익배당은 당장 수익금이 들어오기 어려워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배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세일가스 투자약정서에는 약정기한은 투자금 수령일로부터 27개월로 정하고, 이익배당 개시일도 투자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하며,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익배당액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신뢰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수익 예측 시뮬레이션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세일가스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투자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은 그때부터는 세일가스 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위와 같은 사업 현황 및 실제 수익금 지급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투자 후 3개월 경과한 때부터 바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히 투자유인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부분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FX 마진거래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로서 피고인이 FX 마진거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세일가스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세일가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부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세일가스 사업의 수익이 아닌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세일가스 사업 수익 예측 내용,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 피해자들의 인식 및 투자 경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세일가스 사업 투자약정서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세일가스 관련 사업에 지출하였고, 국제적으로 세일가스 사업이 점차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상습성 관련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편취 금액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1. 11. 21.경부터 2016. 9. 4. 경까지 약 35,037회에 걸쳐 합계 1,073,856,931,45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종전 확정판결은 피고인이 “2012. 1. 2.부터 2014. 8. 27.까지 총 3,822회에 걸쳐 총

67,277,57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모두 그 범행 기간이 상당히 장기이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편취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다.

○ 피고인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 단계적 구조를 가지는 조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규모의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투자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 각 지점에 대한 유치수수료의 지급 등을 관리하였다.

○ 피고인은 FX 마진거래 사업, 세일가스 사업, 오픈마켓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2014. 8. 29. 이전에는 FX 마진거래 사업에 사용하겠다고면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과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 8. 29. 이후에는 투자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자금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 내용이 FX 마진거래 사업이나, 세일가스 사업이나, 또는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이 소비대차계약이나, 투자계약이나에 차이가 있을 뿐, FX 마진거래 사업, 세일가스 사업, 오픈마켓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 피고인은 FX 마진거래 관련 수수료를 통해 취득한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2. 1. 2.부터 2014. 8. 27.까지 총 3,822회에 걸쳐 총 67,277,57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4. 9.경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계속하여, 같은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상환한다고 속이는 편취행위를 계속하였다.

다.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 요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관련 법령

구 방문판매법(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방문판매법(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으로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제7호는 “후원수당이

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사항의 내용으로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을 규정하였다. 개정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규정하면서 제2조 제9호에서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규정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방문판매법에서 금지

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방문판매법 제23조 제2항과 개정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라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FX 마진거래 사업 등에 관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는 것으로 기소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현재 많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방문판매업자로만 신고한 채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위단계의 판매원이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아니거나,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더라도 그 모집과정이나 사업계획에서 소매이익 또는 후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삭제하는 등 다양한 탈법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규율을 피해 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 내지 변형시킨 다단계판매조직은 법적 규율을 피해 다단계판매를 금전투자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조직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더 큰 한편, 그 조직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나날이 변화·발전되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

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결정 참조).

○ 피고인은 2008. 2경 아이디에스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0. 9.경 홍콩에 KIS를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사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2. 1. 2.부터 2014. 8. 2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277,570,000원을 FX 마진거래를 한다는 명목으로 모집하여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IS를 설립한 이후부터 FX 마진거래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X 마진거래 사업의 투자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투자관리시스템은 FX 마진거래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각 지점을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각 지점에 지급할 유치수수료 등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2011. 11. 21. 이후 모집한 투자자와 관련된 부분’도 위 투자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며, 투자조직을 관리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들 이라고 보이는 ‘수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수혜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조직한 각 지점의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이라고 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FX 마진거래를 위해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한 시점과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 수혜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모집이 시작된 2011. 11. 21.경부터는 단계적인 조직구조를 갖추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를 갖추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투자계약서의 형식이 투자자와 피고인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또는 투자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

은 아니다).²²⁾

○ 피고인은 각 지점²³⁾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위 각 지점은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의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유한열은 위 각 지점 중 11개 지점을 총괄하는 그룹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FX 마진거래 사업은 5~5.2%, 세일가스 사업은 7%, 오픈마켓 사업은 4~4.2%)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그룹장인 유한열은 피고인과 별도 협의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였고²⁴⁾,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비율, 해당 투자자를 모집한 모집책 등에게 돌아갈 수수료, 지점장이 가져갈 비율 등을 정해오면 이를 승인해 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각 지점을 조직하고,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을 임명하는 등 각 지점의 내부조직 및 운영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각 지점을 조직하여 운영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개발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의하면 투자자에게 지급될 수익금 외에 각 투자자 별로 2~5명 정도의 '수혜자'들이 기재되어 있고, 각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수료 비율도 기재되어 있다. 위 '수혜자'들은 각 투자자 별로 투자를 유치하였거나, 투자

22)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말경부터 사업을 하면서 금전을 차용해 왔고, 투자관리시스템은 2011. 11.경 만들어 운용되었으므로 2008년 말경부터 2012. 10.경까지의 차용한 금원과 이자 및 원금 반환 내역은 투자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2011. 11. 이후에도 일부 입력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

23) 피고인이 구축된 2016. 9. 당시 도무스 지점, 가온 지점, 서울 지점, 창일 지점, 미래 지점, 엘림 지점, 핫 지점, 여의도 지점, 희망 지점, 영등포 지점, 도원 지점, 중앙 지점, 디오지오 지점, 호성 지점, 노블레스 지점, 마인더스 지점, 강남 지점, 드림 지점 등 18개 지점이 운영되었다.

24) 피고인은 2006년경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유사수신 범행을 하였던 YB리서치라는 회사에 다단계 방식의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 납품한 경험이 있다.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지점장, 팀장 등이고, 피고인은 이들에게도 각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각 지점의 지점장은 투자자들을 유치해 오는 영업을 담당하는 팀장을 관리하면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0.5%)를 지급받고, 팀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2~3%)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구조이다. 한편 피고인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수수료를 각 지점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각 지점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투자금의 약 5%를 매월 각 지점에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투자금을 모집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 지급하는 투자유치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²⁵⁾와 팀장 또는 모집책 등을 관리하는 상위의 지점장 등에게 하위 팀장 또는 모집책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²⁶⁾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투자금을 모집하던 위 각 지점의 지점장들은 대부분 FX 마진거래 사업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기도 한데, 실령 위 각 지점장들이 피고인의 투자금 모집이 사기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피고인의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지점장들은, 위 각 지점의 팀장 또는 모집책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다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동시에, 투자금 유치활동을 하는 피고인보다 하위단계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지점장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이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금전거래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지점이 모두 동일하게 이 부분

25) 이와 같이 물건판매를 위한 다단계조직이 아니라 금전거래만을 하는 다단계조직에서 자신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물건판매를 위한 다단계조직에서 하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여 받는 소매이익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6) 투자유치에 대한 대가 또는 투자유치의 장려금 등 후원수당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공소사실의 전체 기간 동안 유사 다단계조직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지점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 기간에 대하여 방문판매법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데 이용한 위 각 지점이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 즉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하위단계의 판매원은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구 방문판매법이 규정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모두가 경제적 유인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구 방문판매법 적용 부분) 등의 요건을 모두 그대로 갖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각 지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는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등을, 직접 투자유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점과 팀장을 관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지점장 등에게는 팀장 또는 모집책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 각 지점의 구성원과 조직 형태는 실질적으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고, 여기에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방문판매법상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단계판매조직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크다는 것 등을 감안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투자금 모집 방식, 피고인이 지급하는 수익금과 수수료의 성격과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이용하여 수익금과 수수료의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항소도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장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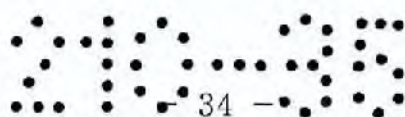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아이디에스아카데미 주식회사(이하 'IDS아카데미'라고 한다), 2014. 10.경 아이디에스홀딩스 주식회사(이하 'IDS홀딩스'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 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버리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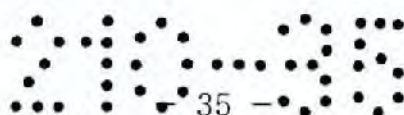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23층에 있는 IDS홀딩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선영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110239272****)로 2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8.경까지 9회에 걸쳐 490,000,000원을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줄 것처럼 행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단, 그 중 피해자 유정화1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들 및 피해금액 각 제외) 기재와 같이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55,924,431,450원²⁷⁾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7) 별지 범죄일람표 1 합계금액 1,073,856,931,450원에서 그 중 검사가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유정화1(별지 순번 19613)의 피해금 10,000,000원(검사 제출 2017. 9. 12.자 공소장변경 관련 의견서 참조)과 별지 범죄일람표 3(면소부분) 합계금액 17,922,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HP빌딩 9층에 있는 IDS아카데미 사무실, 위 IDS홀딩스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 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피고인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 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 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 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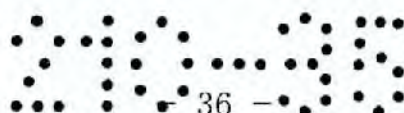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 이상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1. 21.경부터 2016. 9. 4. 경까지 35,448회에 걸쳐 총 1,098,250,544,9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 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실시하는 증거의 요지는 “1. 각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410 등²⁸⁾), 각 입금 영수증, 각 개인투자약정서, 각 이체확인서, 각 진정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본 인금융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서, 공소장변경요청서, 각 이체결과조회서, 각 투자 약정서, 출금 및 송금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개인투자약정서 및 계좌거래내역 서, 통장거래내역 및 입출금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투자금현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28) 이하 각 증거들은 순번 410번 이후의 증거들이고, 별도로 순번을 기재하지는 않는다.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금전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²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약 4년 10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 오픈마켓 사업, 세일가스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2,000여명을 초과하고, 그 피해금액은 1조원을 초과하며,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상환되지 않은 투자 원금만도 약 6,384억

29) 배상명령신청들 중 일부는 동일한 배상신청인이 중복하여 신청한 것이 있고, 일부는 당시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한 것이 있으며, 일부는 제1심에서 신청하였다가 각하된 후 다시 신청한 것도 있는 등 부적법한 것도 있다. 한편 당시 배상신청은 모두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X 마진거래 사업, 오피튼 사업, 세일가스 사업 등을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약 948억 원, 프로모션 비용으로 약 605억 원 등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금액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전체 투자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실제 수행하였다는 FX 마진거래 사업 등에서 발생하였다는 이익 역시 극히 미미하였다는 것 등에 비추어,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그 주장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에 투자한 것인지 조차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하였고, FX 마진거래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 규모를 더욱 크게 확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종전 확정판결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막대한 피해금액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도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 수익으로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거나, 피고인의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투자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될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추진하였다는 사업에서

발생하였다는 수익은 극히 미미하였다는 점이나 과거나 현재의 이 사건 사업 현황, 돌려막기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한 피고인의 자금운용 행태, 피고인의 언행, 기타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피해 규모, 피해회복의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내세운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약 4,843억 원(투자관리시스템에 기재된 반환된 원금 및 수익금 합계)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되어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피고인의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한 데에 따른 유치수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대부분 범죄사실은 종전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이고, 원심 및 당심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현재 피해변제를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피해변제 의사를 신뢰하고 피고인 측이 제시하는 피해변제 방안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³⁰⁾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부분)의 요지는 위 제3 가. 2) 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제3 가.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_____
	판사	최한순	_____
	판사	전휴재	_____

30)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11년 이상)
 [특별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11년 이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등을 특별감경요소로 본다 하더라도 권고형량 범위는 같다.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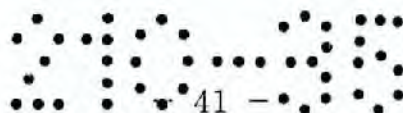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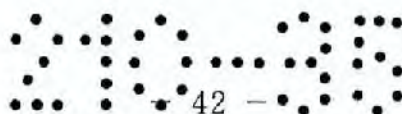
순번	사건번호	접수일	배상신청인	생년월일 ³²⁾	배상신청대리인
1	2017초기63	2017. 2. 23.	김선희	681204	
2	2017초기64	2017. 2. 23.	이케베 가즈히코	641218	
3	2017초기71	2017. 2. 27.	정나영	891230	
4	2017초기72	2017. 2. 27.	최주희	890819	
5	2017초기73	2017. 2. 27.	김상길	820826	
6	2017초기74	2017. 2. 27.	문정미	800510	
7	2017초기76	2017. 2. 28.	김영복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432, 204동 2004호	
8	2017초기77	2017. 2. 28.	곽기정	700123	
9	2017초기79	2017. 2. 28.	정진모	600303	
10	2017초기82	2017. 3. 2.	문미선	760519	
11	2017초기89	2017. 3. 3.	정동우	630921	
12	2017초기90	2017. 3. 3.	김희선	780322	
13	2017초기90	2017. 3. 3.	이소연	530816	
14	2017초기94	2017. 3. 6.	박효성	921204	
15	2017초기95	2017. 3. 6.	이유진	890926	
16	2017초기98	2017. 3. 7.	나상욱	830628	
17	2017초기99	2017. 3. 7.	조연자	560718	
18	2017초기103	2017. 3. 7.	최초록	890912	
19	2017초기106	2017. 3. 8.	이은영	771220	변호사 조영준
20	2017초기109	2017. 3. 9.	김밀알	880920	
21	2017초기113	2017. 3. 13.	최윤정	821122	
22	2017초기114	2017. 3. 13.	차경화	770222	

31)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그 신청을 취하한 신청인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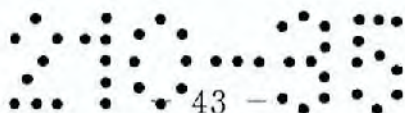
배상신청인 박태임(570815), 김종도(670225), 김명곤(540904), 김용수(830111), 김두한(331009), 김해자(441019), 이귀영(541029), 이신자(440916), 현용순(351208), 최동욱(400508), 강갑남(601023), 구말숙(480627), 최명숙(550522), 황경애(590214), 안채현(640215), 정금자(580828), 김철조(341122), 이경옥(630913), 조춘자(580803), 김윤중(420724), 김순란(590312), 최한순(서울 구로구 고척동 대우아파트 103동 403호), 이기숙(650120), 이연숙(620114), 최병균(630827), 전익자(540214), 신정애(650520)[2017. 3. 8. 접수(2017초기106), 2017. 7. 27. 취하], 황인숙(630402)[2017. 3. 9. 접수(2017초기110), 2017. 4. 21. 취하], 김만연(350301), 정태희(440330), 김민섭(950929)[2017. 4. 7. 접수(2017초기205), 2017. 4. 13. 취하], 장경하(770218)[2017. 4. 21. 접수(2017초기268), 2017. 6. 12. 취하], 심재광(760229)[2017. 4. 21. 접수(2017초기271), 2017. 7. 6. 취하], 박정자(381205)[2017. 6. 8. 접수(2017초기403), 2017. 6. 30. 취하], 이은복(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양우1단지아파트 101동 904호)[2017. 8. 22. 접수(2017초기582), 2017. 8. 28. 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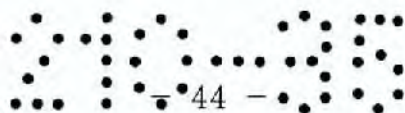
23	2017초기115	2017. 3. 13.	오홍분	501205	
24	2017초기116	2017. 3. 13.	김영홍	500913	
25	2017초기117	2017. 3. 13.	안상미	630405	
26	2017초기119	2017. 3. 13.	조명옥	450803	
27	2017초기120	2017. 3. 14.	주종철	810922	
28	2017초기122	2017. 3. 14.	이재택	531216	
29	2017초기123	2017. 3. 14.	김근섭	801203	
30	2017초기127	2017. 3. 16.	박혜원	830801	
31	2017초기133	2017. 3. 16.	이우람	860922	
32	2017초기138	2017. 3. 16.	손연순	621019	
33	2017초기140	2017. 3. 16.	박경애	550321	
34	2017초기141	2017. 3. 17.	백갑기	600201	
35	2017초기147	2017. 3. 17.	강혜영	531024	
36	2017초기156	2017. 3. 21.	강태우	850208	
37	2017초기157	2017. 2. 27.	조혜진	790422	
38	2017초기161	2017. 3. 22.	김종현	761024	
39	2017초기167	2017. 3. 22.	김정미	841113	
40	2017초기168	2017. 3. 22.	김효종	850722	변호사 임용수
41	2017초기168	2017. 3. 22.	변승하	800630	"
42	2017초기168	2017. 3. 22.	조윤경	780920	"
43	2017초기170	2017. 3. 23.	최명임	720110	
44	2017초기171	2017. 3. 23.	김구중	541027	
45	2017초기175	2017. 3. 24.	강태우	850208	
46	2017초기177	2017. 3. 27.	윤순옥	540405	
47	2017초기179	2017. 3. 27.	문예나	800326	
48	2017초기180	2017. 3. 27.	정창현	550401	
49	2017초기181	2017. 3. 27.	오영애	520818	
50	2017초기182	2017. 3. 27.	이연직	491206	
51	2017초기183	2017. 3. 27.	한상효	540909	
52	2017초기184	2017. 3. 27.	김미화	550322	
53	2017초기205	2017. 4. 7.	엄용민	810830	변호사 이비룡
54	2017초기205	2017. 4. 7.	윤영식	750816	"
55	2017초기205	2017. 4. 7.	장성우	581101	"
56	2017초기205	2017. 4. 7.	차병선	590818	"
57	2017초기205	2017. 4. 7.	구양모	891208	"
58	2017초기205	2017. 4. 7.	이광형	890105	"
59	2017초기205	2017. 4. 7.	양지원	850213	"
60	2017초기205	2017. 4. 7.	이성재	7205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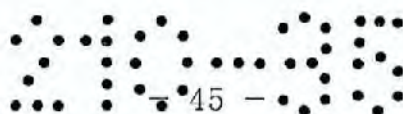
61	2017초기205	2017. 4. 7.	류정한	810903	"
62	2017초기205	2017. 4. 7.	심인영	830806	"
63	2017초기205	2017. 4. 7.	류하정	160428	"
64	2017초기205	2017. 4. 7.	어설희	830304	"
65	2017초기205	2017. 4. 7.	이은정	770527	"
66	2017초기205	2017. 4. 7.	정지현	750913	"
67	2017초기205	2017. 4. 7.	김월수	701110	"
68	2017초기205	2017. 4. 7.	심규섭	870912	"
69	2017초기205	2017. 4. 7.	김지영	790225	"
70	2017초기205	2017. 4. 7.	임부순	550909	"
71	2017초기205	2017. 4. 7.	최명임	720110	"
72	2017초기205	2017. 4. 7.	유진교	40819	"
73	2017초기205	2017. 4. 7.	김구중	541027	"
74	2017초기205	2017. 4. 7.	이은선	650204	"
75	2017초기205	2017. 4. 7.	김기향	910619	"
76	2017초기205	2017. 4. 7.	김영국	610210	"
77	2017초기205	2017. 4. 7.	김민선	911028	"
78	2017초기205	2017. 4. 7.	김정옥	511007	"
79	2017초기205	2017. 4. 7.	손미수	630801	"
80	2017초기205	2017. 4. 7.	이나영	900322	"
81	2017초기205	2017. 4. 7.	차경화	770222	"
82	2017초기205	2017. 4. 7.	이은숙	721203	"
83	2017초기205	2017. 4. 7.	이재희	820910	"
84	2017초기205	2017. 4. 7.	기명이	540904	"
85	2017초기205	2017. 4. 7.	박효성	921204	"
86	2017초기205	2017. 4. 7.	김종현	761024	"
87	2017초기205	2017. 4. 7.	양영미	700105	"
88	2017초기205	2017. 4. 7.	양진국	361107	"
89	2017초기205	2017. 4. 7.	김미숙	660310	"
90	2017초기205	2017. 4. 7.	박은영	821017	"
91	2017초기205	2017. 4. 7.	이재용	841220	"
92	2017초기205	2017. 4. 7.	박민경	820215	"
93	2017초기205	2017. 4. 7.	한홍석	740222	"
94	2017초기205	2017. 4. 7.	김혜진	841228	"
95	2017초기205	2017. 4. 7.	선지원	840115	"
96	2017초기205	2017. 4. 7.	강상구	810202	"
97	2017초기205	2017. 4. 7.	임애자	600105	"
98	2017초기205	2017. 4. 7.	이형란	64072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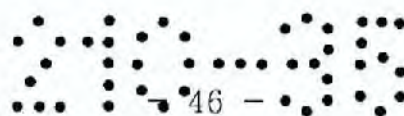
99	2017초기205	2017. 4. 7.	윤여준	840716	"
100	2017초기205	2017. 4. 7.	김정원	590717	"
101	2017초기205	2017. 4. 7.	권연진	820722	"
102	2017초기205	2017. 4. 7.	한주연	720707	"
103	2017초기205	2017. 4. 7.	나상옥	830628	"
104	2017초기205	2017. 4. 7.	조연자	560718	"
105	2017초기205	2017. 4. 7.	윤경순	600210	"
106	2017초기205	2017. 4. 7.	장금순	620515	"
107	2017초기205	2017. 4. 7.	윤순옥	560807	"
108	2017초기205	2017. 4. 7.	안효준	760302	"
109	2017초기208	2017. 4. 10.	강소영	790918	
110	2017초기217	2017. 4. 13.	김지연	801108	
111	2017초기218	2017. 4. 13.	안현주	791104	
112	2017초기223	2017. 4. 13.	허정미	750628	
113	2017초기224	2017. 4. 13.	임현옥	540420	
114	2017초기228	2017. 4. 14.	나정미	800918	
115	2017초기236	2017. 4. 18.	이남규	670816	
116	2017초기237	2017. 4. 18.	최승진	560505	
117	2017초기265	2017. 4. 20.	이현주	831113	
118	2017초기267	2017. 4. 21.	안광현	790608	
119	2017초기269	2017. 4. 21.	심수빈	770801	
120	2017초기270	2017. 4. 21.	김기동	681101	
121	2017초기272	2017. 4. 21.	박큰솔	870130	
122	2017초기276	2017. 4. 24.	허용	710126	
123	2017초기283	2017. 4. 25.	허정미	750628	
124	2017초기284	2017. 4. 25.	임현옥	540420	
125	2017초기287	2017. 4. 26.	오유남	731022	
126	2017초기288	2017. 4. 26.	김진영	760820	
127	2017초기289	2017. 4. 26.	정선민	670710	
128	2017초기290	2017. 4. 26.	박두정	631208	
129	2017초기304	2017. 5. 1.	김창숙	580405	
130	2017초기307	2017. 5. 4.	조동욱	670309	
131	2017초기314	2017. 5. 10.	민경성	850701	
132	2017초기343	2017. 5. 22.	김유미	831223	
133	2017초기344	2017. 5. 22.	임은주	690314	
134	2017초기344	2017. 5. 22.	신나래	930224	
135	2017초기357	2017. 5. 25.	임명주	710921	
136	2017초기372	2017. 5. 31.	김동원	830329	변호사 이종현



137	2017초기372	2017. 5. 31.	김성호	820907	"
138	2017초기372	2017. 5. 31.	이원재	550602	"
139	2017초기372	2017. 5. 31.	윤대환	720927	"
140	2017초기372	2017. 5. 31.	이남재	670115	"
141	2017초기372	2017. 5. 31.	이명록	691110	"
142	2017초기372	2017. 5. 31.	이태선	750225	"
143	2017초기372	2017. 5. 31.	최용희	730224	"
144	2017초기372	2017. 5. 31.	황혜정	691222	"
145	2017초기379	2017. 6. 2.	최현주	730522	
146	2017초기383	2017. 6. 2.	길영희	530829	
147	2017초기384	2017. 6. 2.	박병수	450605	
148	2017초기385	2017. 6. 2.	홍선영	621120	
149	2017초기386	2017. 6. 2.	김정희	710228	
150	2017초기397	2017. 6. 7.	정현규	870406	
151	2017초기408	2017. 6. 9.	김윤지	860112	
152	2017초기409	2017. 6. 9.	이준하	811019	
153	2017초기421	2017. 6. 14.	원양임	490122	
154	2017초기422	2017. 6. 14.	김옥란	480402	
155	2017초기423	2017. 6. 14.	이정숙	550424	
156	2017초기424	2017. 6. 14.	허재영	550618	
157	2017초기425	2017. 6. 14.	진영란	531120	
158	2017초기426	2017. 6. 14.	유정순	600505	
159	2017초기427	2017. 6. 14.	이순희	510906	
160	2017초기428	2017. 6. 14.	김연숙	550929	
161	2017초기429	2017. 6. 14.	송경용	460606	
162	2017초기430	2017. 6. 14.	이연숙	570329	
163	2017초기431	2017. 6. 14.	심춘희	650510	
164	2017초기432	2017. 6. 14.	오우석	911206	
165	2017초기433	2017. 6. 14.	라은순	490510	
166	2017초기434	2017. 6. 14.	김경숙	540217	
167	2017초기435	2017. 6. 14.	김문희	620812	
168	2017초기436	2017. 6. 14.	김정자	440212	
169	2017초기437	2017. 6. 14.	지은성	931011	
170	2017초기438	2017. 6. 14.	이혜숙	560614	
171	2017초기439	2017. 6. 14.	주성희	880205	
172	2017초기440	2017. 6. 14.	심근녀	771003	
173	2017초기441	2017. 6. 14.	김연숙	550929	
174	2017초기442	2017. 6. 14.	김혜선	630321	



175	2017초기443	2017. 6. 14.	권선자	550101	
176	2017초기444	2017. 6. 14.	백옥주	541201	
177	2017초기445	2017. 6. 14.	조길자	520729	
178	2017초기446	2017. 6. 14.	안순임	620317	
179	2017초기447	2017. 6. 14.	심춘연	631210	
180	2017초기448	2017. 6. 14.	심재영	681019	
181	2017초기449	2017. 6. 14.	김옥순	471225	
182	2017초기450	2017. 6. 14.	김연수	610323	
183	2017초기451	2017. 6. 14.	김옥순	450902	
184	2017초기452	2017. 6. 14.	강봉순	500821	
185	2017초기464	2017. 6. 21.	김홍식	550523	법무법인 청목 이주현, 박화신
186	2017초기517	2017. 7. 13.	오지연	880801	
187	2017초기538	2017. 7. 25.	김복희	380406	
188	2017초기542	2017. 7. 28.	김복희	380406	
189	2017초기543	2017. 7. 28.	서애경	650301	
190	2017초기547	2017. 7. 25.	서애경	650301	
191	2017초기548	2017. 8. 4.	여지연	870202	
192	2017초기563	2017. 8. 16.	권순창	590703	
193	2017초기564	2017. 8. 16.	윤미자	600206	
194	2017초기565	2017. 8. 16.	권송아	820208	
195	2017초기566	2017. 8. 16.	권용환	840713	
196	2017초기567	2017. 8. 16.	권송희	870713	
197	2017초기577	2017. 8. 18.	권인숙	460930	
198	2017초기578	2017. 8. 18.	김정숙	461122	
199	2017초기584	2017. 8. 22.	윤태현	720311	
200	2017초기587	2017. 8. 23.	장상봉	370401	
201	2017초기594	2017. 8. 25.	김숙희	650718	
202	2017초기595	2017. 8. 25.	박정진	940919	
203	2017초기596	2017. 8. 25.	공선자	711220	
204	2017초기597	2017. 8. 25.	정민석	970328	
205	2017초기598	2017. 8. 25.	정미희	721111	
206	2017초기599	2017. 8. 25.	박준상	661224	
207	2017초기600	2017. 8. 25.	백춘화	460408	
208	2017초기601	2017. 8. 25.	박희정	721026	
209	2017초기602	2017. 8. 25.	이혜승	880807	
210	2017초기603	2017. 8. 25.	허란	901207	
211	2017초기605	2017. 8. 25.	강봉순	500821	변호사 최규일,



					김평진
212	2017초기605	2017. 8. 25.	권선자	550101	"
213	2017초기605	2017. 8. 25.	김경숙	540217	"
214	2017초기605	2017. 8. 25.	김연수	610323	"
215	2017초기605	2017. 8. 25.	김옥란	480402	"
216	2017초기605	2017. 8. 25.	김옥순	450902	"
217	2017초기605	2017. 8. 25.	김옥순	471225	"
218	2017초기605	2017. 8. 25.	김정자	440212	"
219	2017초기605	2017. 8. 25.	김혜선	630321	"
220	2017초기605	2017. 8. 25.	라은순	490510	"
221	2017초기605	2017. 8. 25.	백옥주	541201	"
222	2017초기605	2017. 8. 25.	손향심	550108	"
223	2017초기605	2017. 8. 25.	송경용	460606	"
224	2017초기605	2017. 8. 25.	심근녀	771003	"
225	2017초기605	2017. 8. 25.	심재영	681019	"
226	2017초기605	2017. 8. 25.	심춘희	650510	"
227	2017초기605	2017. 8. 25.	안순임	620317	"
228	2017초기605	2017. 8. 25.	오우석	911206	"
229	2017초기605	2017. 8. 25.	원양임	490122	"
230	2017초기605	2017. 8. 25.	유정순	600505	"
231	2017초기605	2017. 8. 25.	이순희	510906	"
232	2017초기605	2017. 8. 25.	이연숙	570329	"
233	2017초기605	2017. 8. 25.	이정숙	550424	"
234	2017초기605	2017. 8. 25.	이혜숙	560614	"
235	2017초기605	2017. 8. 25.	주성희	880205	"
236	2017초기605	2017. 8. 25.	지은성	931011	"
237	2017초기605	2017. 8. 25.	진영란	531120	"
238	2017초기605	2017. 8. 25.	허재영	550618	"
239	2017초기606	2017. 8. 28.	이재숙	820119	
240	2017초기609	2017. 8. 29.	이은복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양우1단 아파트 101동 904호	

끝.

32) 신청서에 생년월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로 특정하였다.

